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 번호	접수일	처리 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도) (시·군·구)	※ 시·도, 시·군·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락처	
재발급 사유	[] 분실 [] 훼손 [] 성명 변경 [] 주민등록번호 변경	
	[] 주소 변경 칸 부족 [] 영주귀국 [] 용모(사진)변경 [] 미수령으로 회수·파기 [] 주민등록 말소자의 귀국 [] 재외국민 주민등록 [] 그 밖의 사유	
주민등록증 발급사실 문자통보 서비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배송되거나 민원인에게 교부되었을 때 휴대전화 문자로 그 사실을 통보하는 서비스는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 교부	[] 미교부
주민등록증 수령 방법	[] 신청 기관 방문 [] 주민등록기관 방문 [] 등기우편	
주민등록증 수령 안내 단문 메시지(SMS) 서비스	[] 신청	[] 미신청
등기우편 수령 주소	[] 주민등록 주소와 같음	
※ 주민등록 주소가 아닌 경우: (우)		

「주민등록법」 제27조, 제2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방문 재발급 신청인	성명(한글)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도) (시·군·구)	연락처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 서류	1. 6개월 이내 촬영한 본인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脫帽)상반신 사진(3cm×4cm 또는 3.5cm×4.5cm) 1장 2. 종전의 주민등록증(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다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후에 구(舊) 주민등록증을 찾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구 주민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나.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永住)하기 위해 귀국한 경우로서 국외로 이주하기 전에 주민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다.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경우로서 국외로 이주하기 전에 주민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라. 주민등록증을 발급했으나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아 해당 행정기관이 파기한 경우 마. 습득 주민등록증의 수령을 안내했으나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아 해당 행정기관이 파기한 경우 3. 방문 재발급 신청을 할 때에는 발급 대상자가 중증 장애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수수료 5,000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수급자 정보, 독립유공자 정보, 국가유공자 정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정보, 참전군인 정보, 5·18민주유공자정보, 특수임무수행자 정보,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은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신청과 관련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이 수수료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데 동의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군인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수행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철회는 신청한 날의 근무 시간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근무 시간이 끝난 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중증 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 신청은 해당 중증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중증장애인의 세대주, 배우자 및 직계혈족)가 할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는 국외이주신고자가 출국 전에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으며, 재외 국민 주민등록증은 재외국민으로 등록이 완료된 출국 다음 날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은 외교부의 해외이주신고를 통보받은 이후에 교부할 수 있습니다.

5.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주민등록 통보서비스’ 중 ‘주민등록증 발급 · 재발급’을 신청하면, 본인의 주민등록증 신청이 접수되거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증이 배송되었을 때, 그리고 주민등록증이 교부되었을 때 본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그 사실을 통보해 드립니다.

6. 주민등록증 수령 방법

가. ‘방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 후 3년 내에 주민등록증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주민등록증은 파기됩니다. 발급 신청 기관이 주민등록지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 후 6개월까지는 발급 신청 기관에서 주민등록증을 찾아가시고, 6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주민등록지인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신청 후 주민등록지가 변경되어 변경된 주민등록지에서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주민등록 기관에서 주민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나. ‘등기우편 수령’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할 때 등기우편료를 납부해야 하며, 주민등록증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을 때 단문 메시지(SMS) 안내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휴대전화 번호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다.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 ‘등기우편 수령 주소’ 칸에 작성된 주소로 발송한 주민등록증을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수령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발급 신청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 드리며, 최초 발송일부터 5일 안에 3회 발송했음에도 신청인의 사정으로 주민등록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직접 발급 신청 기관을 방문해 찾아가셔야 합니다.

7. 수수료를 내는 경우

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자연적인 훼손은 제외)해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나. 외과적 시술(재해·재난으로 인한 경우 제외)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다. 발급 및 습득된 주민등록증의 미수령으로 인한 파기로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8. 제출하신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발급 기관에서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